

대 법 원

제 2 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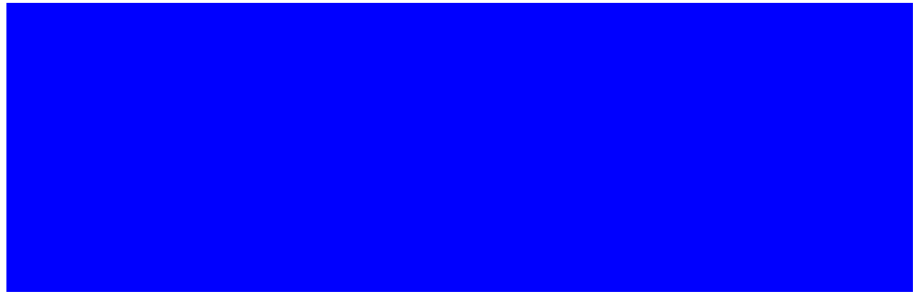
판 결

사 건 2008다9588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
원고, 상고인



피고, 피상고인

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7나128186 판결

판 결 선 고 2012. 3. 29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
가 2006. 3. 23. 주민총회에서 주택
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를 선정하는 결의 부분에 관한 피고의
항소를 기각한다.

피고가 2008. 4. 29. 조합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위 회사를 선정(추

인)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가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(이하 '도시정비법'이라고 한다)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,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,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.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,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.

나.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(1)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(이하 '이 사건 추진위원회'라고 한다)는 2006. 3. 23.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 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장차 설립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[REDACTED] 주식회사(이하 [REDACTED]이라고 한다)를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(이하 '이 사건 제1결의'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(2)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은 2007. 4. 18.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593호(이 사건 제1심)로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. 11. 23. 승소판결을 받았고,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28186호(이 사건 원심)로 항소를 제기하였다.

(3) 피고 조합은 원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8. 2. 27.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, 피고 조합은 2008. 4. 29.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[REDACTED]을 시공자로 선정(추인)하는 내용의 결의(이하 '이 사건 제2결의'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(4) 원고들은 2008. 7. 4.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. 원심은 2008. 11. 11.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, 이 사건 제2결의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총회결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.

(5)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0. 8. 26.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 2010두2579호 판결이 선고되었다.

다. 이상과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

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, 피고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,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. 그럼에도 이 사건 제2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.

2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결의의 효력이 없는 이상, 이 사건 제2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를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타당하다.

한편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 참조),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[REDACTED]을 선정한 이 사건 제1결의는 무효이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하기로 한다.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

하고,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 그리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제2결의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 나아가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김용덕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전수안
--	-----	-----

주 심	대법관	양창수
-----	-----	-----

	대법관	이상훈
--	-----	-----